

#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의안 번호	1432
----------	------

제출년월일 : 2012. 9.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아래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조)  
⇒ 도시공원,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주유소 등
- 금연구역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과태료 부과 규정 (안 제9조)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불임
- 입법예고(2012. 8. 14 ~ 9. 3)결과 의견접수사항 없음

##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말미암은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하여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흡연자가 흡연자 주위에서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지역을 금연하도록 구분하여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을 조사·연구·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버스정류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로서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소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 취지, 장소, 범위를 충주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라도 흡연해서는 안 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는 제4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안내판의 규격, 재질, 구조,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설치할 때 자연환기가 가능하지 않으면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 교육과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직접 금연교육을 할 수도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과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홍보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금연 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 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를 모집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과태료)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8. 12. 31 조례 제 893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 금연구역 표지판안내판 설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

### 1.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가스충전소, 주유소

구 분	세 부 사 항
규 격	가로 30cm 이상, 세로 100cm 이하
재 질	금속, 비금속, 신소재 등 내구성이 있는 재질
구 조	홍보내용 교체가 가능하도록 함
내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li>도시공원 :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니, 이 공원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li><li>학교정화구역 :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학교 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니, 학교 출입문부터 50미터 이내의 정화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li><li>가스충전소, 주유소 :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가스충전소(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니,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보도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li></ol>

\*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 환경에 따라 표지판의 모양, 크기,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2. 버스 정류장

구 분	세 부 사 항
규 격	가로, 세로 20Cm 이상
재 질	PVC 재질, UV 코팅
내 용	버스정류소 :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니,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보도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관계법령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34조제3항(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전문개정 2011.12.6]

#### [별표 5] <개정 2011.1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 3항			
3)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